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 안 번 호	334
------------	-----

제안연월일 : 2025. 6. 18.

제 안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용과 활동 결과 등을
활동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추진 근거

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 활동기간: 2024.12.18. ~ 2025. 6.18.(6개월간)

다. 주요 활동내역

라. 조례정비 결과 및 성과

3.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64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 제64조(위원회의 설치)

-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 제10조(특별위원회)

-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 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 기간으로 한다.
- ④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13명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의회는 예산안, 결산 및 기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 ⑥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목 차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추진 근거	1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1
3. 주요 활동내역	2
4. 조례정비 결과	3
5. 성 과	5
[붙임] 소관 국별 정비조례 목록	6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상위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 등을 발굴하고 정비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임.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특별위원회)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 명 칭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구성결의 : 제31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 [2024.12.18.(수)]
- 구성인원 : 11명
 - 위 원 장 : 손병화 의원
 - 부위원장 : 김샤인 의원
 - 위 원 : 이하식 의원, 장종례 의원, 김광철 의원, 최옥주 의원, 신영재 의원, 김영심 의원, 장원만 의원, 정주리 의원, 전 정 의원
- 활동기간 : 2024. 12. 18. ~ 2025. 6. 18.
- 활동보좌 : 11명 (전문위원, 담당자, 정책지원관)
- 정비대상 : 송파구 현행 조례 중 2022. 7월 이전 제·개정 조례
⇒ 총196건

3

주요 활동내역

일 시	활 동 내 역	비 고
2024.12.18.	- 제31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본회의
2025. 2.27.	-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최 - 참석위원 : 11명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특별위원회 회의
2025. 3.10.	-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최 - 참석위원 : 10명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	특별위원회 회의
2025. 3.11. ~ 4.30.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위원회별 활동 - 행정교육소위원회, 재정복지소위원회, 도시건설소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
2025. 4.29.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실무자 회의 (1차) - 참석자 : 9명(조례정비특별위원회 담당자 및 정책지원관) - 장 소 : 의회사무국 1층 - 내 용 : 세부활동 일정, 세부 정비방향 등 협의	실무자 회의
2025. 5.14.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 별도 개정 추진대상 조례 범위의 확정 - 개정 방식의 결정 및 향후 일정 협의	특별위원회 간담회
2025. 5.22.	-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최 - 참석위원 : 11명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례 정비안 검토	특별위원회 회의

일 시	활 동 내 역	비 고
2025. 5.23.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정비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조회 - 공문발송: 의회사무국-8518(2025. 5.23.) - 대 상 : 정비대상 조례안 총171건 - 기 간 : 2025. 5.23.(금) ~ 5.30.(금) - 내 용 : 조례특위에서 마련한 정비(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조회	집행부 의견 조회
2025. 5.28.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실무자 회의 (2차) - 참석자 : 9명 - 장 소 : 의회사무국 1층 - 내 용 : 세부 정비방법 논의 및 향후 일정 협의	실무자 회의
2025. 6. 2. ~ 6.10.	• 집행부 의견 검토 및 최종 정비안 마련 - 관계부서와 협의 및 의견반영 - 띄어쓰기, 문장부호 정비만 있는 조례는 정비안에서 제외 (의회법무팀 요청 시, 즉시 반영)	실무자 회의
2025. 6.11.	•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최 - 참석위원 : 11명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특별위원회 회의
2025. 6.18.	•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최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특별위원회 회의

4

조례정비 결과

○ 정비조례 건수: 총 138건

- 개정조례: 136건
- 폐지조례: 2건

- 정비대상 196개 조례 중 단순 '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정비만 있는 조례는 기획예산과(의회법무팀)로 수정 요청 → 즉시 정비 완료
- 집행부 및 의원 별도 개정추진(예정) 조례는 정비 대상에서 제외

○ 소위원회별 정비조례 건수

소위원회	정비대상 조례(건)	정비 결과(건)			정비율
		미정비	개 정	폐 지	
합 계	197	59	136	2	71.57%
행 정 교 육	80	29	51	0	63.75%
재 정 복 지	86	27	57	2	68.60%
도 시 건 설	31	3	28	0	90.32%

※ 정비대상 조례 1개 증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는 2022.11.03. 개정되어 정비대상 조례가 아니나, 상위법령에 따라 별지 서식의 '인감증명서'를 '신분증'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반영에 따른 정비대상에 포함
(정비대상 조례 건수: 변경 전 196건 →변경 후 197건)

○ 유형별 정비결과

소위원회	유형별 정비 건수				
	총 계	상위법령 반 영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약칭표기 및 인용조문 정비	폐지조례
합 계	1,520	96	1,308	114	2
행 정 교 육	420	13	357	50	0
재 정 복 지	713	65	618	28	2
도 시 건 설	387	18	333	36	0

○ 소관 국별 정비조례 건수 (세부내용: 붙임 참조)

소관 국	개정조례 건수	폐지조례 건수	총 계
감 사 담 당 관	7		7
홍 보 담 당 관	2		2
행 정 안 전 국	27		27
기 획 재 정 국	22		22
주 민 복 지 국	23	1	24
교 육 문 화 국	6		6
도 시 현 대 화 국	10		10
교 통 환 경 국	17		17
전 략 기 획 단	1		1
의 회 사 무 국	9		9
보 건 소	12	1	13
총 계	136	2	138

5

성 과

- 송파구 현행 조례 335건 중 2022년 7월 이전 제·개정된 조례에 대한 일제 조사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총138건 정비)
- 구의회·집행부 간의 협의를 통한 조례 일제 정비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 자치법규의 통일성 및 신뢰성 확보에 따른 구민 편익 제고

붙임: 소관 국별 정비조례 목록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14

연번	제 명	소관부서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공공갈등 예방에 관한 조례	감사담당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감사담당관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감사담당관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감사담당관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감사담당관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감사담당관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조례] 19

연번	제 명	소관부서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홍보담당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어 사용 조례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 21

연번	제 명	소관부서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총무과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총무과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총무과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조례	총무과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총무과

연번	제 명	소관부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총무과
7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총무과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자치행정과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자치행정과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명예주민증 수여 조례	자치행정과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	자치행정과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 조례	자치행정과
15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자치행정과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행정과
17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자치행정과
18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19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시안전과
20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안전과
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안전과
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도시안전과
2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도시안전과
24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첨단도시과
25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	첨단도시과
26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민원행정과
27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민원행정과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 37

연번	제 명	소관부서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기획예산과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기획예산과
3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획예산과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획예산과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기획예산과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기획예산과
7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기획예산과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기획예산과
9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기획예산과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 촉진 조례	기획예산과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기획예산과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기획예산과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기획예산과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진흥과
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진흥과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경제진흥과
17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경제진흥과
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경제진흥과
19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재무과
20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세무행정과
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세무행정과
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세무행정과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 52

연번	제 명	소관부서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복지정책과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복지정책과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복지정책과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에 관한 조례	여성보육과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보육과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	여성보육과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여성보육과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여성보육과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여성보육과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	어르신복지과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	어르신복지과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이동청소년과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동청소년과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동청소년과
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복지과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복지과
17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장애인복지과
18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장애인복지과
19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장애인복지과
2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장애인복지과
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장애인복지과
2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장애인복지과

연번	제 명	소관부서
2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장애인복지과
24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기사랑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여성보육과

[교육문화국 소관 조례] 93

연번	제 명	소관부서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교육협력과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문화예술과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생활체육과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광진흥과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관광진흥과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관광진흥과

[도시현대화국 소관 조례] 99

연번	제 명	소관부서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주택사업과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주택관리과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택관리과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주택관리과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주택관리과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도시계획과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 조례	건축과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원녹지과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	공원녹지과

연번	제 명	소관부서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부동산정보과

[교통환경국 소관 조례] 108

연번	제 명	소관부서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도시교통과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	도로관리과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도로관리과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도로관리과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맑은환경과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맑은환경과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맑은환경과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맑은환경과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	맑은환경과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	맑은환경과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맑은환경과
12	서울특별시송파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맑은환경과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청소행정과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청소행정과
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자원활용과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원활용과
17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자원활용과

[전략기획단 소관 조례] 130

연번	제 명	소관부서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둘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간개발과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131

연번	제 명	소관부서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의회사무국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의회사무국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의회사무국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의회사무국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의회사무국
7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의회사무국
8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의회사무국
9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의회사무국

[보건소 소관 조례] 138

연번	제 명	소관부서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	보건위생과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건강증진과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건강증진과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건강증진과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약과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의약과

연번	제 명	소관부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의약과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조례	의약과
9	서울특별시 송파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의약과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생애건강과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보건지소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보건지소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보건위생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공공갈등 예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공공갈등 예방
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조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
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
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본문 중 “1차”를 “한 차례”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가 있는 때에는”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5일전”을 “5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아니하다”를 “않다”로 한다.

제14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여론등”을 “주민여론 등”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부구정평가단운영회(이하“운영회”)”를 “주부구정평가단운영회(이하 “운영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능별로전문성”을 “기능별로 전문성”으로, “자를구청장”을 “자를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월1회”를 “월 1회”로 한다.

제7조 중 “구에서는”을 “구는”으로, “구 시책사업은 주부구정평가단의 의견을 수렴 후 이를”을 “수렴한 의견은 구 시책사업에”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능력증진 및 사기진작”을 “능력 증진 및 사기 진작”으로 한다.

제10조 중 “따로정한다”를 “따로 정한다”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

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를 “송파구”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송파구”를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를 각각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준”을 “둔”으로, “소재하는”을 “소재한”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1/3”을 “3분의 1”로 한다.

제13조제4항 본문 중 “회의의 내용과 결과를”을 “회의 내용과 결과를”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를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로, “법 시행”을 “같은 법 시행”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로,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구의회”를 “구의회”로, ““구”를 “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을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임·직원”을 “임직원”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재적위원수”를 “재적위원 수”로 한다.

제9조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10조 중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로, “그 목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를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으로, “주민의 150인 이상”을 “주민 150명 이상의”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담당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기본법」 제5조 및 「평생교육법」 제22조”를 “「교육기본법」 제5조 및 「평생교육법」 제22조”로, “인터넷방송국(이하“방송국”이라 한다)”을 “인터넷방송국”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있어서”를 “있어”로 한다.

제3조 중 “방송국”을 “송파구 인터넷방송국(이하 “방송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호를 제3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이하“구청장”이라 한다.)”를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5.18민주유공자와”를 “5·18민주유공자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한부모가족 지원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송파구 국어 사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어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고려해야”를 “고려하여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호 중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13조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으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2조 중 “위원회의”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를 “지시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로, “상당하는”을 “준하는”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을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으로, “송파구(이하“구”라 한다)”를 “송파구”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구 본청**”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법 제2조제2항**”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으로, “**4급이상**”을 “**4급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를 “**제1항에 따라 2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하는 협의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구협의회**”라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보건소협의회**”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의회사무국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구의회사무국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 :**”을 “**공무원:**”으로, “**의하여 명확한**”을 “**따라 명확한**”으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를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중 “**공무원 :**”을 각각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

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9호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7일이내”를 “7일 이내”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제외하고 협의회를 탈퇴하려면”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협 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협 의하려면”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송파구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송파구민의 화합과 지역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송파구민의 날을 설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구민”을 “송파구민”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

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법」 제2조제2항”을 “「의료법」 제2조제2항”으로, “공무원에게”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사 :”를 “의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공무원 공무원 :”을 “공무원인 의사:”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를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를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를 “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로,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보조공학기기·장비”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보조공학기기 등”을 “보조공학기기·장비”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조공학기기 등을”을 “보조공학기기·장비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조공학기기 등”을 “보조공학기기·장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보조공학기기 등”을 “보조공학기기·장비”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보조공학기기 등”을 각각 “보조공학기기·장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보조공학기기 등”을 “보조공학기기·장비”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를 “감사장으로 구분한다”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단체 ,”를 “단체 ”로 한다.

제11조 단서 중 “상장의 경우에는”을 “상장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을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24조 및 영 제36조”를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24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민
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
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이”를 “이”로, “주민들”을 “주민”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주민모두”를 “주민 모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도 ·
주민자치”를 “제도 · 주민자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월말”을 “1월 말”로 한다.

제13조 중 “통로”를 “경로”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등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등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송파구 명예주민증 수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명예주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송파구(이하“송파구””를 “송파구(이하 “송파구””로, “제고
한”을 “높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7명이내”를 “7명 이내”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송파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포함한다)간”을 “포함한다) 간”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위원수”를 “위원 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관 · 단체”를 “기관 · 단체”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되는”을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로 한다.

제5조 중 “구청장”을 “송파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을 “구민상”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구민상”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구민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를 “구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를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로, “그 목적”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한 차례만”을 “1회에 한하여”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상호신뢰”를 “상호 신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립·시행해야”를 “수립·시행하여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설치·운영 할”을 “설치·운영할”로 한다.

제11조제5호 중 “적합 하지”를 “적합하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연4회”를 “연 4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민 · 관협치”를 “민관협치”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민 · 관협치”를 “민관협치”로 한다.

제18조 중 “민 · 관”을 “민 · 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민관 간”을 “민 · 관 간”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행 · 재정적”을 “행정 · 재정적”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9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구청장은”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28조”를 “제40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특별법 제29조제2항”을 “특별법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제2조제1호”를 “제2조제2호”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위촉하되,특정”을 “위촉하되, 특정”으로 한다.

제14조 중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송파지구협의회”를 “송파구협의회”로 한다.

제2조제1호 전단 중 “송파지구협의회”를 “송파구협의회”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요청이 있는”을 “요청을 받은”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로 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건설기술진흥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완료한”을 각각 “마친”으로 한다.

제14조 중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를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로, “구성·운영”을 “구성·운영”으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를 “「장애인복

지법」 제2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청소년 기본법」 제3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을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60조제2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제4호”를 “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장례비 :”를 “장례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치료비 :”를 “치료비:”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3. 「기술보증기금법」”을 “3. 「기술보증기금법」”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4. 「신용보증기금법」”을 “4. 「신용보증기금법」”으로, 같은 조 제5호 중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5. 「지역신용보

증재단법”으로 하며, 제6호 중 “6. 「농업협동조합법」”을 “6. 「농업협동조합법」”으로,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7. 「국민연금법」”을 “7.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명의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명의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1조의2”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로 한다.

제43조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유족보상 :”을 “유족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경우 :”를 각각 “경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인감증명서)”를 “신분증)”으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인터넷민원”을 “인터넷 민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을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홈페이지주관부서로”를 “홈페이지 주관부서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홈페이지주관부서”를 “홈페이지 주관부서”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홈페이지주관부서”를 각각 “홈페이지 주관부서”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홈페이지주관부서”를 각각 “홈페이지 주관부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인터넷민원”을 “인터넷 민원”으로, “「전자정부법」 제9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홈페이지주관부서”를 각각 “홈페이지 주관부서”로 한다.

제24조 중 “비밀번호를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업무 처리규칙」 제29조”를 “비밀번호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
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한다.

제3조 중 ““구청장” 이”를 ““구청장”이”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를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기록관(이하“기록관”이라 한다)”을 “기록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기록관””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이하“기록관”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전문요원(이하“전문요원””을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관리업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관리업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우수부서”를 “우수 부서”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을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으로 한다.

제2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송파구(이하“구”)”를 “송파구(이하 “구”)”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으로 한다.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중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운영방향”을 “운영 방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특정성별”을 “특정 성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민간 전문가”를 “민간 전문가”로, “지방재정분야”를 “지방재정 분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한차례”를 “한 차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60조”를 “「지방재정법」 제60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37조의2”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시에,”를 “시,”로, “시에 각각”을 “시 각각”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작성”을 “작성 후”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5조 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행 상**”을 “**수행에**”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정하고자 하는**”을 “**선정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선정절차**”를 “**선정 절차**”로 한다.

3. 지원사업 대상 기관 및 응모 방법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결정**”을 “**교부 결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말소하고자 할**”을 “**말소할**”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등**)”을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내용**”을 “**신고 내용**”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특정성별**”을 “**특정 성별**”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반복 사업**”을 “**반복 사업**”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최종결정하되**”를 “**최종 결정하되**”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의한 지원**”을 “**따른 지원**”으로, “**의한 협조**”를 “**따른 협조**”로, “**의한 사무직원**”을 “**따른 사무직원**”으로 한다.

제9조 중 “**범위내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을 “**성명, 직위, 예산 사용 내역**”으로 한다.

제12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여함**”을 “**기여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설치하고자 할 경우**”를 “**설치할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특정성별**”을 “**특정 성별**”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설치근거”를 “설치 근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존속기한”을 “존속 기한”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개함으로서”를 “공개함으로써”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를”을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낭비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특정인임”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특정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를 “예산 절감이나 수입 증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산낭비”를 “예산 낭비”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높이기”로, “규정함”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중 “예산편성시”를 “예산 편성 시”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미리 선정기준”을 “선정기준”으로, “등을 미리”를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어느 한 성(性)”을 “특정 성별”로 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위원 등”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주요시책”을 “주요 시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그 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회의개최”를 “회의 개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을 “최초 제안자의 제안 내용”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

별시 송파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함”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송파구(이하 “구”)”를 “송파구(이하 “구”)”로, “업무협약”을 “업무 협약”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업무제휴·각종”을 “업무 제휴·각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업무제휴·각종”을 “업무 제휴·각종”으로 한다.

제6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속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송파구에 소속하는 공무원”으로, “함을”을 “하는 것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직무발명이라 함은”을 “직무발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개인발명이라 함은”을 “개인발명이란”으로, “발명이외의공무원”을 “발명 이외의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발명자라 함은”을 “발명자란”으로 한다.

제4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발명자명의**”를 “**발명자 명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한 특허출원**”을 “**따라 특허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13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출원중**”을 각각 “**출원 중**”으로 한다.

제17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위원회의 의사등**)”을 “(**위원회의 의사 등**)”으로 한다.

제30조 중 “**지식경제부령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 촉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공유단체”란”을 ““공유 단체”란”으로, “송파구(이하“구””를 “송파구(이하 “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유기업”이란”을 ““공유 기업”이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참여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공유단체·기업의 지정 등)”을 “(공유 단체·기업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기업”을 “공유 기업”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기여함”을 “기여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변경하고자 할”을 “변경할”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때에 는”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를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중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0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구청장의승인”을 “구청장의 승인”으로 한다.

제21조 중 “의하여”를 “따라서”로, “보고하여야한다”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사업년도)”를 “(사업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업년도”를 “사업연도”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매사업년도”를 “매 사업연도”로, “사업년도 개시 40일 전”을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매사업년도”를 “매 사업연도”로, “2월”을 “2개월”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7조 중 “필요시”를 “필요 시”로 한다.

제3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을”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공익보호등 기타”를 “공익보호 등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수당등)”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당·여비 기타”를 “수당,여비,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요시책”을 “주요 시책”으로, “자문에 응하게 하기”를 “자문을 받기”로, “규정함”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호선으”를 “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고시”를 “직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중요정책”을 “중요 정책”으로 한다.

제6조 중 “분과소위원회”를 “분과 소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주요행사”를 “주요 행사”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회의결과”를 “회의 결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를 “것을 목적으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여”로, “육성지원하기”를 “육성 지원하기”로, “규정함”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 중 “유휴농지”를 “유휴 농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약간 명”을 “약간의 인원”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송파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송파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균형있”을 “균형 있”으로, “이바지함”을 “이바지 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중 “경영안정과 성장기반”을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을 “(경영 안정 및 창업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안정”을 “경영 안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경영상담”을 “경영 상담”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창업 지원사업”을 “창업 지원 사업”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재난발생시 소상공인 지원)”을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 지원)”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를 “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를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자문하기”를 “심의·자문하기”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등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를 “등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로 한다.

제6조제11항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을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행정절차법상」”을 “「행정절차법」”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4. 「건설기술 진흥법」”을 “4.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6. 「지방회계법」 제46조”를 “6. 「지방회계법」 제46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날로 부터”를 “날로부터”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영 제92조의7제1항”을 “영 106조의2”로 한다.

제13조 중 “3천만원 이상”을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54조”를 “「지방자치법」 제154조”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다만, 「전자정부법」 제14조”를 “다만, 「전자정부법」 제14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를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를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를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8. 「독립유공자에 우에 관한 법률」 제6조”를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를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를 “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11.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를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을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⑤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⑤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서울특

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징수촉탁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를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징수촉탁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세징수법」 제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8조”로, “「지방세기본법」 제11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1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를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3”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제8조”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을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우에는타기관·단체”를 “경우에는 타기관·단체”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활동의”를 “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를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2조”를 “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내역”을 각각 “(사업)내용”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조제1호”를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교부한”을 “내준”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가없”을 “대가 없”으로 한다.

제3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호(종전의 제12호) 중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13 국제협력”을 “국제협력”으로 한다.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제4조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센터는 「민법」 제40조”를 “센터는 「민법」 제40조”로, “기재한”을 “적어 넣은”으로,

“소재지”를 “주소”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관장하는”을 “맡아 처리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비”를 “실제 비용”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중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업비 지원 및 실비 지급)”을 “(사업비 지원 및 실제 비용 지급)”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위원 :”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민간위원 :”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개의를”을 “회의를 시작”으로 한다.

제12조 중 “단체의”를 “단체”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와 「국적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적법」 제3조”를 “「국적
법」 제3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적법」 제4조”를 “「국적법」 제4조”로 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제6조제2항 중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
2조의3”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3”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3호 중 “유관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개의를”을 “회의를 시작”으로 한다.

제12조제3호 중 “부적합하다고”를 “적합하지 않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비위”를 “비위(非違)”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
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
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반”을 “모든”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공기관의 정

「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근로기준법」 제11조”를 “「근로기준법」 제11조”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 서울특별시”를 “①서울특별시”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 구청장”을 “② 구청장”으로, “있다.·”를 “있다.③”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 구청장”을 “①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를 “②”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성별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2조 중 “· 성별영향분석평가”란을 “· 성별영향평가”란으로, “분석평가하여”를 “평가하여”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 분석평가**”라 한다)”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4조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분석평가 제도**”를 “**성별영향평가 제도**”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이하 · 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0조**”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0조**”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분석평가의 대상**)”을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제6조제1항 본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 법**”을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으로, “**분석평가의 대상(이하 · 평가대상**”을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하 “평가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분석평가의 고려사항**)”을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을 “**성별영향평가를**”로, “**분석평가 결과**”를 “**성별영향평가결과**”로, “**분석평가의**”를 “**성별영향평가의**”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분석평가의 실시 시기**)”를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분석평가서 및 종합결과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을 “(**성별영향평가서 및 종합결과보고서의 작성과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를**”을 “**성별영향평가를**”로,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분석평가의**”을 “**성별영향평가의**”로 하며, 후단 중 “**분석평가서**”

를 각각 “성별영향평가서”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분석평가 교육)”을 “(성별영향평가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의”를 “성별영향평가의”로, “분석평가에”를 “성별영향평가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분석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한다. 같은 조 제1호 “분석평가결과”를 “성별영향평가결과”로, 제2호 “분석평가 대상”을 “평가 대상”으로, 제3호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제4호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제5호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2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준수한다”를 “지킨다”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를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및”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를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0조 중 “「지방재정법」 제3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로 한다.

제11조 중 “「통계법」 제18조”를 “「통계법」 제18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제5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수”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한다.

부칙 제2조제2항 “노인·청소년·여성기금”을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친화도시”라 함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복한 임신·출산·육아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사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출산친화도시정책”이란 출산친화도시 조성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출산친화도시사업”이란 이 조례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정책과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포함한 관련 단체·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는 지역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한다.1. 출산친화도시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
2. 출산친화도시의 추진체계, 연차별 추진계획 및 세부추진사업 목록3. 출산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4. 그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을 “한다”로 한다.

1. 출산친화도시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
2. 출산친화도시의 추진체계, 연차별 추진계획 및 세부추진사업 목록
3. 출산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중 “한다.1.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의 협력 기반 구축2. 임신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반 조성3. 모자보건 및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4. 보육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구축5. 출산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6. 그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한다”로 한다.

1.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의 협력 기반 구축
2. 임신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반 조성
3. 모자보건 및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4. 보육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구축
5. 출산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

6.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중 “한다.1. 출산장려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2. 모자보건·건강증진사업3. 가족친화활동지원·인증사업4. 일·가정양립사업5. 그밖에 구청장이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한다”로 한다.

1. 출산장려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2. 모자보건·건강증진사업
3. 가족친화활동지원·인증사업
4. 일·가정양립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제2항 중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정책 및 사업의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4. 연구개

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5.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을 “한다”로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정책 및 사업의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10조 중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그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있다”로 한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제8조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하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하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3세대이상”을 “3세대 이상”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관계 없”을 “관계없”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2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을 “「아동의 권리

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1.“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를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를 “2.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3.“아동·청소년”을 “3. “아동·청소년”으로 한다.

제10조 중 “·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구청장 은”을 “구청장은”으로, “장 및 직원,”을 “장, 직원 및”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아 동”을 “아동”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아동을 위한”을 “아동을 위한”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기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를 “기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로 한다.

제15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

제13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아동복지법」”을 “조례는 「아동복지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1호”를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6조제11호”를 “법 제52조제8호”로 한다.

제4조 중 “자는 「법 시행규칙」 제10조의”를 “자는 법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호”를 “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 제25조”를 “「청소년 보호법」 제31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부모 및 친권자,”를 “부모, 친권자 및”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9조”로,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을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통하여 자립된 삶을 살”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생활”을 “직업재활과 고용촉진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질

향상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 중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사업주 및 구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공공부문에서 장애인의 의무고용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장애인의 특성과 역량을 반영한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구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을 “공공부문에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영하는 사업에”를 “수행하는 사업에 장애인의”로, “장애인 고용”을 “일자리 제공”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형태의 일자리 마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수준**”을 “**복지 수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희망·적성·장애유형과**”를 “**희망, 적성, 장애유형 및**”으로, “**취업알선**”을 “**취업 알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안정적**”을 “**안정적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박람회**”를 “**박람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직업재활에**”를 “**직업재활을 위하여**”로 한다.

1. 장애인의 희망, 적성 및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한 직업적응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2.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및 고용정보 제공

6.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책**”을 “**지원 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업의 생산·판매제품**”을 “**기업이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여성장애인 고용**”을 “**여성장애인을 고용한**”으로, “**우대**”를 “**우대 혜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우선 지원

4.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또는 알선

제9조의 제목 “(경비보조)”를 “(경비 보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보호작업장과”를 “보호작업장 또는”으로, “등 장애인의 직업재활·적응 훈련 사업”을 “등에서 수행하는 직업재활, 직업적응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각종대회”를 “각종 대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고용촉진과 직업 재활에”를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을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업 추진을”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관련자료 등을 협조”를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이나 기업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이나 협조를”로 한다.

제11조 중 “고용기업,”을 “고용기업 또는”으로, “기관 및 개인을 표창할”을 “기관이나 개인에 대하여 표창을 할”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

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권리보장 및”을 “권리 보장과”로,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함으로써,”로, “영위하는데”를 “영위하는 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보호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으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연령별, 생애주기별 특성을”을 “연령, 생애주기 등 개인의 특성을 종합적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이 포함되어야”를 “사항을 포함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옹호”를 “옹호 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가정폭력 등의”로, “지원”을 “보호·지원 방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을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발달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 및 직업훈련에 관한 지원 방안

3.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그 가족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5. 발달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자녀 양육에 관한 지원 대책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삶을 보장하기**”를 “**삶과 권리 보장**”로, “**사업에 대하여**”를 “**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장애 인식 개선**”을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홍보**”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및 직업훈련**”을 “**촉진 및 직업훈련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평생교육**”을 “**평생교육 기회 확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발달장애인 지원에**”를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로 한다.

4. 보호자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전문 심리상담 지원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달장애인을 위한**”을 “**제1항에 따른 센터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으로, “**개설한다**”를 “**개설하고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하나로서 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조직, 시설, 운영 방법, 교육과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하며, 해당 운영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의 제목 “(**평생교육센터의 업무**)”를 “(**센터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생교육센터”를 “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문교양, 직업능력”을 “인문 교양, 직업 능력”으로, “한글학습”을 “문해교육”으로,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등을 포함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을 “센터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른”으로 한다.

2.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 지원이 필요한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방안의 수립

제9조제1항 중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을 “센터의 효율적”으로,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로, “평생교육센터의 관리·운영”을 “그 관리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생교육센터”를 “센터”로, “자료제출과”를 “자료 제출 및”으로, “있으며,”를 “있으며, 필요시”로, “업무의 운영 사항과 장부·시설·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를 “운영 실태, 회계 장부, 시설 및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로 한다.

①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예산, 결산 등 주요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1조 중 “권리보장”을 “권리 보장”으로, “단체·시설, 의료기관”을 “단체, 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으로 한다.

제12조 중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을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으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를 “발달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13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설치 계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및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를 “설치·운영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및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장애인복지

법」 제2조”로,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 이”를 “북한이탈주민이”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한다)와”를 “한다)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서 정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을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로, “조례에 따른다”를 “조례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송과구청장 또는”을 “송과구청장,”으로, “장과”를 “장 및”으로,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을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계약 상대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로, “사전”을 “사전에”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하고자 하는”을 “설치하려는”으로, “구비하여 신청”을 “갖추어 공공시설의 장에게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신청서[별지 서식]”를 “별지 서식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신청서”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공시설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 등과 우선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별표에 따라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외에 계약에 필요한 세부 기준이나 절차는 공공시설의 장이 정하거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다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을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은 계약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갱신 받으려는”을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으로, “끝나기 1개월 전에”를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로, “갱신 신청을 하여야”를 “신청하여야”로 한다.

② 공공시설의 장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매회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의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공시설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공공시설의 장은 다음”으로, “그 계약”을 “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를 “계약자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을 “체결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를 각각 “계약자가”로 하고, 같은 호 중 “하는”을 “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익상 필요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운영을 종료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과 방법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국수화언어법」과”를 “「한국수화언어법」 및”으로,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를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의 개선과 활성화에”로,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이하 “송파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및 송파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이하 “송파구”라 한다), 송파구의회, 송파구 소속 행정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 인식 제고와 환경 개선에 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송파구민과”를 “송파구민 및”으로, “직원에 대하여”를 “직원을 대상으로”로, “할”을 “실시할”로 한다.

제4조 중 “법령 또는”을 “법령이나”로,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농인 등의 편의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시설이용”을 “공공시설 이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 통역”을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가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을 “농인 등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으로, “행정적”을 “대하여 행정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어 통역을”을 “수어통역을”로, “수어 통역에”를 “이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인 등(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를 말한다)의 가족을 위한”을 “농인 등의 가족을 대상으로”로, “등의”를 “등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로 한다.

제8조 중 “발전과 보급,”을 “발전, 보급 및”으로, “공적이”를 “공로가”로, “법인, 단체에게”를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이동 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수동·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이동기기 중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4. “지원대상”이란 이 조례에 따라 이동기기 수리 비용의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5. “협약”이란 구청장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와 체결한 문서로, 이동기기 수리 업무의 범위, 절차, 수리 품질, 방문 수리, 보고 및 청구 방법 등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비영리장애인단체**”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비영리 장애인단체**”로, “**사회적 기업 등에 위탁하여 운영**”을 “**사회적기업 등에게 수리센터 운영을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정 또는**”을 “**지정하거나**”로,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방문수리 지역은**”을 “**방문 수리의 범위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리비**”를 “**수리 비용**”으로, “**경우에만 해당된다**”를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리대상**”을 “**수리 대상**”으로, “**원칙으로 하고,**”를 “**원칙으로 하며,**”로, “**꼭**”을 “**반드시**”로, “**부품·장비·악세사리**”를

“부품, 장비, 액세서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원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지원 대상별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간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6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2. 관내 거주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확인 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을 “매월”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2. 관내 거주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② 지정수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동기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 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해당 월 말일까지 지정수리업체의 지정 계좌에 청구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 중 “위반하거나”를 “위반하거나,”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지정 협약을”을 “수리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며”를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접근이 용이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할”을 “설치하려는”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를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 중 “제공하기 위해”를 “제공하기 위하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제6조제2항”를 “제6조제3항”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심의·건의한다”를 “심의하거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복지관련”을 “복지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2012.4.9”를 “2012. 4. 9.”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 장애인복지사업”을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사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회 위원은”을 “위원회는”으로, “포함한 30명 이내”를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를 “구청장이 되며”로, “선출한다”를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명 또는”을 “임명하거나”로, “위원 중”을 “위원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송파구청”을 “서울특별시 송파구”로, “장애인정책”을 “장애인 정책”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위촉위원”을 “위촉 위원”으로, “하되 한 차례만”을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를 “결원으로”로,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본인의 의사로 해촉을 요청한 경우
4. 위원이 장기간 회의에 불참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임기가 정해진 장애인 단체의 장으로서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제6조제1항 중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소집하고자 할 때”를 “소집하려는 경우”로, “심의안건”을 “심의 안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적위원”을 “재적 위원”으로, “출석위원”을 “출석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을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관계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작성·관리”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구성·운영 할”을 “구성·운영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에서”를 “위원회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하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며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위원을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를 “소위원회의 위원은 9명 이내로 하며,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동일한 위원이 둘 이상의 소위원회에 중복하여 선임될 수 있다.

제8조제4항 중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를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의 경우를”을 “이 조례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로 한다.

제9조 중 “본 위원회”를 “위원회”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으로, “반영토록”을 “반영하도록”으로 한다.

제10조 중 “인정되는 경우”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으로, “관계인(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를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로,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을 “자료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간사와 서기 각”을 “간사 1명과 서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위원회는 서기 각”을 “소위원회에는 서기”로 한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12조 본문 중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를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 제목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을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관련 부서 또는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로 한다.

제14조 중 “정한 것 외에”를 “정하지 아니한”으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을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기”로, “마련하여야”를 “확보하여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장애인차별금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로,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편의제공”을 “편의 제공”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장애인차별”을 “장애인 차별”로, “실태”를 “실태에 대한 조사”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사회 참여 증진을 위한”으로 한다.

1.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사업
2.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사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 관련 모니터링 사업

제5조의 제목 “(교육)”을 “(교육 및 홍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소속 공무원”을 “구 소속 기관”으로, “단체 종사자, 사업주”를 “관련 단체 종사자, 구의 예산 지원을 받는 기관의 관계자”로, “교육”을 “교육과 홍보 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구 홈페이지에 배너를 개설·운영하거나,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6조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정밀 재조사 등)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차별 또는 인권 침해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하여 정밀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중전의 제7조)제1항 중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침해에 관한 실태조사”로, “실시하여야 하며”를 “실시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정책수립”을 “정책 수립”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법규와”를 “자치법규,”로,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한다”를 “제도적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중전의 제9조)제1항 중 “제7조의”를 “제6조에 따른”으로, “제8조의 정밀 재조사”를 “제7조에 따른 정밀 재조사”로,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실태조사단””을 “실태조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로 정한다”를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10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인권보장위원회””를 “인권보장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정책”을 “주요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인권보장에”를 “인권보장을 위하여”로 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중전의 제11조)제1항 중 “포함한”을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를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며,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부모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에는 장애 유형을 고려하여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부모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중전의 제11조) 제4항제6호 중 “장애인차별과”를 “장애인차별금지와”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남은 기간”을 “잔여 임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촉위원을 연임하려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중전의 제13조)제1항 중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좌하고”를 “보좌하며,”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4조)제1항 중 “개최하며”를 “개최하고”로,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를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소집하려는 때에는”을 “소집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 밖의 부득이한”을 “불가피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 과반수의 출석”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5조) 중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를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7조를 제16조로 하며,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중전의 제17조) 본문 중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를 “출석한 위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한다.

제18조(중전의 제19조)제1항 중 “제4조의 지원사업 관련자 및”을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관계자,”로,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으로, “안”을 “아니”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9조(중전의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정한 사항 이외에”를 “정한 사항 외에 시행에”로,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설치·운영하도록하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기”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연시설과 지역문화복지시설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공연장 등의 관람석 중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고, 긴급한 상황에 대피하기 쉬우며, 시야 확보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동반자”란 장애인의 관람을 지원하거나 함께 입장하여 관람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투자되는”을 “투입되는”으로, “투·용자심사와”를 “투용자심사,”로, “설계 심사를 하는”을 “설계심사를 실시할”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공연장 등의 전체 관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관람석 수가 2천 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구조와 위치는 장애인의 접근성과 시야 확보, 대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최적관람석을 다양한 위치에 배치하여 장애인의 좌석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대피통로 사이에 장애인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중 “주관하는사람”을 “주관하는 사람”으로,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를 “같은 구역 내에 두거나 인접 좌석으로”로 한다.

제7조 중 “관리·운영하거나”를 “관리·운영하거나,”로, “시설이”를 “공연장 등을”로,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경우”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민간운영시설의 권장)”을 “(민간 공연장 등의 설치 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설에 대하여도”를 “공연장 등에 대하여”로, “최적 관람석의 설치를”을 “최적관람석을 설치하도록”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모범이 되는 자랑스러운 장애인을 발굴·시상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기관 및 단체를 표창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장애인’이란”을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으로, “등록한 장애인”을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수상대상)”을 “(수상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소를 둔 개인, 기관 및 단체에게 수

여한다.

② 다만,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수상 부문 및 인원) 이 상의 수상부문과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상 후보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문에 대한 시상을 생략할 수 있다.

1. 올해의 장애인상 : 5명 이내
2. 장애인복지 유공상 : 5명 이내

제5조(심사기준) ① 올해의 장애인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수상한다.

1. 중증장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하는 장애인
2.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공이 있는 장애인
3.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기여한 공이 있는 장애인
4. 정치·경제·문화·체육·예술 등 각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공인받은 자
질로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한 공이 있는 장애인
5. 그 밖에 구민에게 모범이 되는 자랑스러운 장애인

② 장애인복지 유공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게 수상한다.

1. 장애인을 위하여 적극적인 후원활동이나 자원봉사를 전개한 개인, 기관

및 단체

2. 장애인의 자립·고용·편의제공·재활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

3.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공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

4.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

제6조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를 “구청장이 수여한다”로 한다.

제7조 중 “시상은”을 “이 상은”으로, “실시하며”를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로, “시상시기”를 “시상 시기”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상장수여)”를 “(상장 등 수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상자”를 “이 상의 수상자”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9조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수상 후보자 심사) ① 수상 후보자의 심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제9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 후보자에 대하여 간사는 공적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 중 “수상후보자”를 “이 상의 수상 후보자”로,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학교장,”을 “기관장, 사회단체장, 학교장, 서울특별시”로, “자료”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2조)의 제목 “(수상제외 대상)”을 “(수상자 결정 등)”으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중전의 제12조)제2호 및 제3호 중 “기관, 단체 및 개인”을 각각 “개인, 기관 및 단체”로 한다.

제14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문화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
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관할구역안”을 “관할 구역 안”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으로 한다.

제12조제3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허위보고”를 “거
짓보고”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
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송파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송파문화재단”으로 한다.

제2조 중 “재단의”를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로,
“「민법」 등”을 “「민법」 등”으로 한다.

제4조제6호 중 “국내·외”를 “국내외”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회무를 통할한다”를 “사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대해서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6조 중 “3월말”을 “3월 31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인 체육 진흥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
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장애인
체육”을 “장애인 체육”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하
고, 같은 조 제2호 중 ““장애인체육”이란”을 ““장애인 체육”이란”으로 하며, 같
은 조 제3호 중 ““장애인체육동호회”란”을 ““장애인 체육동호회”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을 ““장애인 체육단체”란 장애인 체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장애인체육시설”이란”을 ““장애인 체육시설”이란”으로 한다.

5. “장애인 우수 선수”란 전국 또는 시·도별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선수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장애인체육 진흥”을 “장애인 체육 진흥”으로, “장애인체육진흥 계획”을 “장애인 체육 진흥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체육활동”을 “체육 활동”으로, “장애인체육 진흥”을 “장애인 체육 진흥”으로, “장애인체육 활동”을 “장애인 체육 활동”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장애인체육교실 운영 등)”을 “(장애인 체육교실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애인체육교실”을 “장애인 체육교실”로, “장애인체육 단체”를 “장애인 체육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장애인체육”을 각각 “장애인 체육”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장애인체육”을 “장애인 체육”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장애인체육”을 “장애인 체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장애인체육단체”를 “장애인 체육단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장애인 우수선수”를 “장애인 우수 선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애인체육시설”을 “장애인 체육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장애인체육행사”를 “장애인 체육 행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장애인체육”을 각각 “장애인 체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장애인체육단체”를 “장애인 체육단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장애인체육**”을 “**장애인 체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인체육단체**”를 “**장애인 체육단체**”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장애인체육 발전**”을 “**장애인 체육 발전**”으로, “**장애인체육동호**”를 “**장애인 체육동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장애인체육**”을 각각 “**장애인 체육**”으로 한다.

제11조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을 “「**관광진흥법**」 제48조의8”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발급해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은마이스산업”을 “은 마이스산업”으로 한다.

제4조 중 “따르되, 제12조제2항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국내·외”를 “국내외”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국내·외”를 각각 “국내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관기관”을 “유관 기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관내·외”를 “관내외”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유관기관”을 “유관 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민간시설의대관지원”을 “민간시설의 대관 지원”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송파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1조”를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를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당 교육이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고, 강의를 수행한 자가 구 소속 공무원이면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제3항 중 “**교육실적**”을 “**교육 실적**”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시행령**”을 ““**영**”으로, “**단체(이하“수탁자”**”를 “**단체(이하“수탁자”**”로 한다.

제10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영 제1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현대화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를 “제 1 장 총 칙”을 “제1장 총 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로 한다.

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중 “제 2 장 사업의 시행”을 “제2장 사업의 시행”으로 “제 1 절 공공시설의 정비”를 “제1절 공공시설의 정비”로 한다.

제11조 앞에 “제 1 절 공공시설의 정비”을 “제1절 공공시설의 정비”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노폭”을 “길 폭”으로, “구배”를 “기울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제2항 후단 중 “「서울특별시 송파 구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보상금지급조례가”를 “보상금지

급조례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을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으로 한다.

제14조 앞에 “제 2 절 건축물의 정비”을 “제2절 건축물의 정비”로 한다.

제15조 앞에 장 번호를 “제 3 장 관리처분계획”을 “제3장 관리처분계획”으로 한다.

제16조 전단 중 “무허가건물확인원에 의한다”를 “무허가건물확인 의사에 따른다”로 한다.

제19조 중 “법 제48조제5항제2호”를 “법 제74조제4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도시개발법」 제28조”를 “「도시개발법」 제28조”로,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중 “쌍방”을 “양쪽”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후단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의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29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9조제2항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미만 :”을 각각 “미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이상 :”을 “이상:”으로 한다.

제34조 앞에 장 번호를 “제 5 장 재 정”을 “제5장 재 정”으로 한다.

제35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 제17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7조”로 한다.

제37조 앞에 장 번호를 “제 6 장 보 칙”을 “제6장 보 칙”으로 한다.

제37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8조제1호 중 “사유없이 매수 통지일로 부터 60일 이내”를 “사유 없이 매수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 6항”으로 한다.

제2조 중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를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를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요청서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을 “요청서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실시 여부**”를 각각 “**실시 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감사에 착수**”를 “**감사를 시작**”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징구할**”을 “**요구하여 제출받을**”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8조 중 “**조례의 규정에 의한**”을 “**조례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당해 법인의 임·직원**”을 “**해당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의1을 제12조의2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2조의1)의 제목 “**의1(조정신청의 통지)**”을 “**(조정신청의 통지)**”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조정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4호서식삭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락여부**”를 “**수락 여부**”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7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5호서식삭제**”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확증있**”을 “**확증 있**”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 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 라 한다)”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제9조제2항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이에 따라야”로 한다.

제10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제2항”을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호”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2호”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소방기본법」 제13조”를 “「소방기본법」 제13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공중”을 “일반인”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축법」 제20조제3항”을 “「건축법」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3”을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3”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2인이상**”을 “**2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장하는**”을 “**맡아 처리하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개최하고자 하는**”을 “**개최할**”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전회**”를 “**직전**”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들어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2호나목**”을 “**만들어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선하며**”를 “**선출하며**”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을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제12조, 법 제16조”를 “법 제11조, 법 제17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소재하는”을 “있는”으로 한다.

제8조 중 “청취하거”를 “듣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환경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별표1의2제4호”를 “별표 2제4호나목”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란”를 ““도로”란”으로 “제11조 및 제15조”를 “제14조
및 제18조”로 ““특별시도“ 및”을 ““특별시도”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 “도로점용공사“란”을 ““도로점용공사”란”으로 한다.

제4조 중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을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20이상”을 “20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
조”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자문회의 구성 · 운영)”을 “(자문회의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로 한다.

제12조 중 “「도로법」 제99조제2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하여야 한다.”를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 이”를 “이”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목 “제1조 (목적)”을 “제1조(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이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제2조 (기능)”을 “제2조(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 도시시설의”를 “1. 도시시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건설공사의”를 “2. 건설공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3.현장 여건상”을 “3. 현장 여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4.그 밖에”를 “4. 그 밖에”로 한다.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제3조의 제목 “제3조 (구성)”을 “제3조(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① 위원회는”을 “① 위원회는”으로 하고, “30인이내”를 “3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②위원장은”을 “② 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제4조 (위원장의 직무)”를 “제4조(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2명을 두되 간사는 해

당과장이, 서기는 해당주무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제5조 (회의)”를 “제5조(회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조 제1항 중 “①위원장은”을 “① 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②위원회의”를 “② 위원회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제6조 (소위원회 구성)”을 “제6조(소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①위원장은”을 “① 위원장은”으로 하고, “인정하는”을 “인정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②위원회는”을 “② 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③소위원회는”을 “③ 소위원회는”으로 하고, “5인이상 10인 이내”를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제7조 (소위원회 운영등)”을 “제7조(소위원회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①소위원회”를 “① 소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②소위원회별”을 “② 소위원회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③소위원회의”를 “③ 소위원회의”로 하고, “제9조,”를 “제9조 및”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제8조 (자문요청)”을 “제8조(자문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①위원회의”를 “①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요청을 받을때에는”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요청을 받은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③구청장은”은 “③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제9조 (의견청취등)”을 “제9조(의견청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등”을 “인정할 때에는 위원 등”으로, “출석하게하여”를 “출석하게 하여”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제10조 (결과보고)”를 “제10조(결과보고)”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제11조 (회의록)”을 “제11조(회의록)”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의시”를 “회의 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개최일시”를 “1. 개최 일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출석위원”을 “2. 출석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3.자문사항”을 “3. 자문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4.기타”를 “4.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제12조 (위원의 해촉)”을 “제12조(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위원 이”를 “1. 위원이”로 하고, “6월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위원 스스로가”를 “2. 위원 스스로가”로 하고, “3.위원이”를 “3. 위원이”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제13조 (수당 및 여비)”를 “제13조(수당 및 여비)”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 제목 “제14조 (운영세칙)”을 “제14조(운영세칙)”으로 하고, 제목 이외의 부분 중 “관하여”를 “관한”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로,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면도로”라 함은”을 ““이면도로”란”으로,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을 ““보행자전용도로”란”으로, “안전표지 그 밖의 이”를 “안전표지나 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PEB)”라 함은”을 “(PEB)”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며, 같은 호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1.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4조제1호 중 “보도 : 당해”를 “보도: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경우 : 당해”를 각각 “경우: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50%”를 “50퍼센트”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얼음 : 보도**”를 “**얼음: 보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얼음 : 도**”를 “**얼음: 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눈: 시설물**”을 “**눈: 시설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점용료. 변상금,**”을 “**점용료 · 변상금 및**”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서울시에너지조례**”를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점용료등의 부과 · 징수**)”를 “(**점용료 등의 부과 ·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로법(이하**”를 “「**도로법**」(이하”로, “**자에게는법 제66조**”를 “**자에게는 법 제66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을 “**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을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제6조 중 “**제4조 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을 “(**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의 제목 “(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을 “(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를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제9조의2 중 “별표7 중 제2호 가목”을 “별표 7 중 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는 「도로법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를 “자는 「도로법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징수하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를 “징수하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관계없이”를 “관계 없이”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제22조”를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제22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을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구”라 한다)”를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위촉위원 :**”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1명(이하“민간위원장”**”을 “**1명(이하 “민간위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정하는**”을 “**인정할**”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후변화위원회(이하“분과위원회”**”를 “**기후변화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자연도시위원회 :**”를 “**자연도시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협의회 :**”를 “**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후변화위원회 :**”를 “**기후변화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안심의**”를 “**의안 심의**”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1조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긴급한 안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를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서울특별시송파**

구(이하 “구”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송파구”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구”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구청장” 이라”를 ““구청장”이라”로 한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제1호 중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사업소,동주민센터”를 “사업소, 동주민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3. 「지방공기업법」 제76조”를 “3. 「지방공기업법」 제76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6.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5조제2항제1호 중 “중 · 장기”를 “중 · 장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 · 홍보”를 “교육 · 홍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내 · 외”를 “국내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

준”을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0조제3항”을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 제12조제1항제1호 중 “50%이상”을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3조 중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를 “구매담당자, 생산자 및”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음·진동 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을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기타물체”를 “그 밖의 물체”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00m²”를 “10,00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0조 중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별표9”를 “별표 9”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33조**”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6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단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를 “**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로 한다.

제1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구민**”을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을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5조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제10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하수개발·이용자**”란 · **지하수법** · (이하 “**법**”이라 한다)”를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개발 · 이용시설**”을 “**개발·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을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으로, “**개발 · 이용하는**”을 “**개발·이용하**

는”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지하수개발 · 이용 시설”을 “지하수개발 · 이용시설”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보조지하수관측망””을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비상급수시설””을 “비상급수시설”로 한다.

1.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 개발 · 이용시설

제6조제1항 중 “자료”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을 “구의원”으로 한다.

제9조 중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 징수등)”을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 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납세고지서를”을 “세외수입고지서”로, “납세고지서에는”을 “세외수입고지서에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납세고지서”를 “세외수입고지서”로 한다.

제20조 중 “「송파구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5-1호서식에 의한 납세고지서”

를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세외수입 고지서”로, “납세고지서에는”을 “세외수입고지서에는”으로 한다.

제26조 중 “영 제44조제3항”을 “영 제44조”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지방세법의 준용)”을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 수입금 징수의 예”를 “관하여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을 “,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4조 중 “제3조 제1항”을 “제3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별표>”를 “[별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제3조 제3항”을 “제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5호 중 가목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가. 다만, 자동차 매연 과다발산 차량신고에 대하여 1인 신고 건수 5대당 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송파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 개정) 서울특별시송파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송파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구민”을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으로, “먼지 중 흡입성”을 “흡입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PM-10:미세먼지)”를 “(PM-10: 미세먼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PM-2.5:초미세먼지)”를 “(PM-2.5: 초미세먼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송파구”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송파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 “구민”을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를 “구”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정·해제요건·절차”를 “지정·해제요건, 절차”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나쁨”을 “나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보는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예보는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4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송파구””를 ““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현장평가단으로
부터”를 “현장평가단으로부터”로 한다.

제5조제3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
기물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으로, “송파구와”를 “구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울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청소. 환경”을 “청소·환경”으로 한다.

제12조 중 “평가위원회)”를 ““평가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4호 중 “인센티브”를 “우대 혜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이내”를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청소·환경
업무”를 “청소·환경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궐위된”을 “공석이 생기게 된”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수준의”를 “수준”으로 한다.

제23조 중 “제21조부터 22조까지”를 “제21조 및 제22조”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의한”을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5.“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건설공사”라 한다)”를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대통령령 이”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그밖에 인센티브”를 “그 밖에 우대 혜택”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 및 처리”를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로 한다.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을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대형폐기물 :”을 “대형폐기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생활폐기물 :”을 “생활폐기물:”로, “배출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배출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자(이하“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를 “자(이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생활폐기물 :”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제2호 중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을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의3제3항 중 “절차등”을 “절차 등”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영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제1호”를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로, “가족으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를 “가족으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음식물류 폐기물”이란”을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을 “2. “음식물류 폐

기물 발생억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3.“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를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250㎡이상”을 “2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4.“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을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5.“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을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6.“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하“자원화시설”)을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로 한다.

제3조 중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를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송파구(이하“구”)를 “송파구(이하 “구”)로 한다.

제5조 중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을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사람(이하“다량배출사업자”)를 “사람(이하 “다량배출사업자”)로 한다.

제8조제5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를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로, “「농수산

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10조 중 “제10조(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등) .”를 “제10조(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처리비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3호”를 “처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100”을 “100분의 5”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처리하고자 하는”을 “처리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100”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령 제7조제2항”을 “영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를 “각 호의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를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를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로, “가족으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를 “가족으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를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인정하는 .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4조 중 “ . 이”를 “이”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한다**”를 “**수행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를 “**재활용센터운영
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료**”
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이내**”를 “**이하**”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관련 법규의 적용**)”을 “(**다른 법령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규를**”을 “**법령을**”로 한다.

별지 제3호를 삭제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제6조**”를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업시행자”란**”을 “**“사업시행자”란**”으로,
“**(이하 “법”이라 한다)**”를 “**(이하 “법”이라 한다)**”로, “**(이하 “영”이라 한다)**”를

“(이하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을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송파구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중량제봉투 배출량을 송파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3이상”을 “1.3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송파구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송파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8조 중 “10%”를 “1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략기획단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둘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둘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으로써, 송파구의**”를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의**”로, “**구민**”을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으로 한다.

제2조 중 “**송파구가**”를 “**구가**”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구민 · 민간단체 · 기업체**”를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민간단체 및 기업체**”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함으로서”를 “함으로써”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사업의 보조금의 교부)”를 “(사업 및 보조금 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 중 “부대되는”을 “따르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송파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송파구청장”을 “구청장”으로, “승인내용”을 “승인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송파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6조 중 “송파구청장으로부터”를 “구청장으로부터”로, “송파구청장에게”를 “구청장에게”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마멸되거”를 “닳아 없어지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이미지형태”를 “이미지 형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컴퓨터파일”을 “컴퓨터 파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아니하는”을 “않을”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연수”를 “교육연수에”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2조”를 “「지방자치법」 제102조”로, “서울특별

시송파구의회의(이하 “의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로,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및”을 “정수 및”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①의회의”를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②사무국은”을 “② 사무국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①사무국에”를 “① 사무국에”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②사무국장은”을 “② 사무국장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①소속위원회의”를 “① 소속위원회의”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②전문위원은”을 “② 전문위원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③전문위원은”을 “③ 전문위원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회에 두는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서로 정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를 “지시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로, “상당하는”을 “준하는”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를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를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를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를 “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로,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국내·외”를 “국내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보조공학기기·장비”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보조공학기기 등”을 “보조공학기기·장비”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조공학기기 등을”을 “보조공학기기·장비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조공학기기 등”을 “보조공학기기·장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보조공학기기 등의”를 “보조공학기기·장비”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보조공학기기 등”을 각각 “보조공학기기·장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보조공학기기 등**”을 “**보조공학기기 · 장비**”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송파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로, “**해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송파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 “**구축 · 운영해야**”를 “**구축 · 운영하여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송파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청구취지**”를 “**청구 취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야**”를 “**하여야**”로 한다.

3. 연서 주민 수

제10조제1항 중 “**제출해야**”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반의”를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복지혜택”을 “복지 혜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설계·운영시”를 “설계·운영 시”로 한다.

제6조 중 “공무원에게 예산을 지원하거나 관련시설”을 “공무원 또는 관련 시설”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송파구의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의회의원”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의장”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말한다”를 “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를 “그가 부양하고”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애등급”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애등급”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경우 :”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 :본인 또는 당해”를 “경우: 본인 또는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의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을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의회의원”을 각각 “의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로 한다.

제15조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
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학교보
건법」 제5조”를 “「학교보건법」 제5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도로교통법」 제12조”를 “「도로교통법」 제12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제5조 중 “「청소년 보호법」 제5조”를 “「청소년 보호법」 제5조”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를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로,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를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과반수이상”을 “과반수”로,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한다.

제7조 중 “보건위생과장”을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11조”를 “「지역보건법」 제11조”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치”를 “센터”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관리운영하기”를 “관리·운영하기”로, “때에는”을 “경우,”로, “전문 의료기관 및”을 “전문의료기관 또는”으로,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을 “관련 기관·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기간”을 “위탁 기간”으로, “재위탁을 하고자 할 때”를 “재위탁하고자 할 경우”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 업무, 위탁 기간, 위탁 조건, 관리 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작성·비치하고”를 “작성하여 비치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리목적”을 “영리 목적”으로,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을 “우선하여 모든 시설과”로 한다.

1. 조직, 인사 및 보수

2. 재산 및 물품의 관리

3. 안전 관리

4. 사무 처리 절차 및 기준

5. 지도 및 감독

6. 운영 평가

7.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노인의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을 “치매관리사업을 성실히 수행”으로,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을 “운용 자산은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과 장비 등을”을 “시설 및 장비를”로, “관리자로서”를 “관리자”로, “다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를 “다하여야 하며, 그”로, “재 위탁”을 “재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법령과”를 “관계 법령 및”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 그”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운영능력”을 “운영 능력”으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및”을 “또는”으로,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를 “않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인정하는 때”를 “인정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자는 제1항”을 “제1항”으로, “때에”를 “경우 수탁자”로 하며,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수탁재산”을 각각 “수탁 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전”을 “사전에”로,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를 “수탁 재산에 포함하지”로 한다.

1. 수탁자가 제6조를 위반한 경우

제8조 중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협약한 경우에”를 “제3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로, “그 운영”을 “운영”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효율적”을 “효율적인”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고려 하여”를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원”으로, “지역주민, 관계전문가, 교수, 관계공무원”을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교수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위촉 또는”을 “위촉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 차례만”을 “1회에 한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운영위원회는 연2회”를 “위원회는 연 2회”로, “개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재적과 출석위원”을 “개최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범위 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외한다”를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협약운영자는 사업의 운영과 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을 “수탁자는 사업 운영 및 예산·결산에 관한”으로, “사업연도”를 “회계연도”로, “보고”를 “구청장에게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고의 세부 항목과 제출 방법 등은 협약 체결 시 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수탁사무”를 “수탁 사무”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시정하여야 할”을 “시정이 필요한”으로, “때에는 관계 규정”을 “경우,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치매관리법」, 「지역보건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그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성·보급”을 “조성”으로, “지키는데”를 “지키는 데”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조성·보급”을 “조성”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관광”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의료관광(이하“의료관광”이라 한다)”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을 “의료관광”(이하 “의료관광”이라 한다)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을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으로,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유치업자(이하“유치업자”라 한다)“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

2항”을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관 등”을 “기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사항을 포함한다”를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추진방향”을 “추진 방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을 “민·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원 전문인력”을 “전문인력”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중 “의료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를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기 위하여”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 및”을 “심의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을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 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등 정책 수립
2.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심사 및 평가

제6조제2항 중 “하며”를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하며”를 “하며”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을 “사람 중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송파구의회에서”를 “송파구의회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분야 교수 및”을 “분야의 교수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관”을 “소관 부서의”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하고**”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생겼을**”을 “**발생한**”으로,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를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나의**”를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을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스스**”를 “**위원이 스스**”로, “**원하는**”을 “**요청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질병,**”을 “**질병이나**”로, “**직무**”를 “**인해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품위손상**”을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으로, “**활동이**”를 “**활동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를 “**구분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제3항 중 “**사항**”을 “**세부사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위원 수당 등**)”을 “(**수당 등의 지급**)”으로 한다.

제10조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해당 회의 안건과 직무상 직접 관련이 있는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제1항 중 “**위촉 · 운영 할**”을 “**위촉하여 운영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거**”를 “**실시하거**”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홍보마케팅**)”을 “(**홍보 및 마케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해 우수한 의료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고 복합의료 관광상품을 해외마케팅하기 위해 필요한**”을 “**위하여 송파구의 우수한 의료기**

술 및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복합 의료관광 상품을 해외에 마케팅하기 위한”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을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를 “위하여”로, “추진하는 협력기관이나 의료관광 관련단체 등에”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 등에 대하여”로, “지원할”을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홍보마케팅”을 “홍보 및 마케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상품개발”을 “상품의 개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활동 등”을 “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위해 지원이”를 “위하여”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홍보마케팅”을 “홍보 및 마케팅”으로, “효율적인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를 “송파구 의료관광의 효율적인”으로, “지정·운영”을 “지정하여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지정받고자”를 “지정을 받고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때에는”을 “경우”로 한다.

② 구청장은 협력기관 지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협력기관 지정계획 및 신청 절차, 신청 기한 등을 공고하고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제15조의 제목 “(협력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협력기관 지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함에 있어”를 “지정할 때”로, “검토하여 지정”을 “검토”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의료관광의”를 “의료관광 관련 업무”로, “장비, 시설 등”을 “장비 및 시설의 보유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처분 이력 및 민원 발생 여부

제16조의 제목 “(협력기관의 해촉 및 지정취소 등)”을 “(협력기관 지정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 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협력기관 지정기준”을 “지정 기준”으로, “경우”를 “경우로서,”로, “지정취소로 의결된 때”를 “지정 취소가 의결된 경우”로 한다.

1. 폐업, 전출 등 지정 유지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7조의 제목 “(관련기관 등의 협조 요청)”을 “(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해 필요한 때에는”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청취하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를 “의료관광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로, “관련기관이나”를 “관련 기관,”으로, “단체에게”를 “단체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 업무”를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기관”을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으로, “등에 관한 사항은”을 “등 위탁 절차에 관하여는”으로 한다.

1.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교육

제8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을 “정신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로,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정신건강검진·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을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이란”으로, “정신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정신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을 “정신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말한다.)”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해”를 ““정신건강검진비”란”으로,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을 “진료 행위에 대하여 지원하는 비용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신건강검진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한다.)”를 “한다)”로, “제도와 원활한 여건 조성을 하도록 기본계획을 매년”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를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사업의 추진 방향과 지원 내용

2. 그 밖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검진기관의 선정)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은 정신 건강검진 및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대상)”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본인이 동의한 자로 한다.

② 지원 대상의 세부 기준은 구청장이 매년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정한다.

제6조의 제목 “(지원내용)”을 “(지원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정신건강검진에 대한”을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으로, “검진실시와 관련된 비용을”을 “검진비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건강검진”을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으로,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제출하여 구청장에게 검진비용을”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검진기관명”을 “검진기관의 명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상자 이름”을 “대상자의 성명”으로, “주소, 진료내역”을 “주소 및 검진 내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필요한”을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검진비 내역

② 구청장은 검진비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검진 내역 및 지원 요건 등을

확인한 후 해당 검진기관에 검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정신건강검진”을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으로, “정신건강지역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송파구 기초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가 통
합 운영할 수 있다”를 “정신건강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3항) 중 “하되 한 차례만”
을 “하되, 1회에 한하여”로, “남은 기간으”를 “잔여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7
항(중전의 제4항) 중 “보건소의 정신건강검진 업무부서”를 “보건소 정신건강검
진 담당 부서”로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지역협의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초정신건강심의(심사)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지역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
청장이 위촉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3. 정신건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정신건강검진”을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의”로, “지원범위”를 “지원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를 “검진기관에 대한 지원, 모니터링 및 허위 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정신건강검진”을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으로 한다.

1.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사업의 추진 전략과 세부 계획에 관한 사항
제10조의 제목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을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정신건강검진”을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으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위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환수조치 등)”을 “(환수 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원대상”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허위청구에 의하여 검진기관에 검진비가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환수조치 하여야”를 “하며, 허위 청구로 검진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진기관 대상”을 “해당 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송파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송파구민”을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으로, “추진하는 노력을 해야”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구민 건강 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행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모자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자치법」”을 “, 「모자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명칭은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위한전문적”을 “위한 전문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부

속 시설의 유지관리”를 “부속시설의 유지·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송과구청장(이하“구청장””을 “송과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를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모자보건법」 제10조제2항”을 “「모자보건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서울시에 소재하는”을 “서울특별시 소재”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수탁자와 사전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다만,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를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 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를 “해지되거나 위탁 기간이 종료된 경우 센터 운영을 위해 제공된 시설,”로, “비품을”을 “비품 일체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를 “센터의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한 경우”로,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를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센터의”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시설”을 “센터의 시설”로 한다.

①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위탁 협약에 따라 산모, 영유아 및 센터 이용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위탁의 취소)”를 “(위탁의 해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를 “발생한 경우, 수탁자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를 “운영을 위탁한 경우,”로, “그”를 “수탁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운영”을 “센터 운영”으로, “사용하게 할”을 “사용하도록 허가할”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센터”를 “센터의”로, “이용을 신청하는 날 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구”라 한다)”를 “이용 신청일 현재 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한”을 “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있으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를 “있으며,”로 하며, 같은 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이용제한)”을 “(이용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의”를 “등 센터의”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를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를 “다만”으로, “작성한 경우”를 “제출

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입실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감염병이 있는 산모 및**”을 “**감염병 확진을 받은 산모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설**”을 “**센터의 시설**”로, “**위해를 끼칠**”을 “**중대한 위해를 가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이용질서**”를 “**센터의 이용 질서**”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운영위원회를 재구성 하여야**”를 “**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한 차례만**”을 “**1회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 및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중 “**매년도**”를 “**연간**”으로, “**운영**”을 “**운영 방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추진**”을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구소속**”을 “**구 소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가 있을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임무**”를 각각 “**직무**”로 하고, 같은 호 중 “**야기**”를 “**유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를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로, “수립·시행하는데”를 “수립·시행하는 데”로, “구민”을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으로, “영위하는데”를 “영위하는 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판단 되는”을 “판단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생명존중문화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민에”를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명예와”를 “인권과 사생활, 명예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들의”로, “위하여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를 “노출되었거나 위험에 처해 있다고 느낄 경우 구청장 또는 관련 기관에”로, “권리가”를 “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민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가능한 범위에서 구조를 돕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용을 포함한다”를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살예방홍보”를 “자살예방 관련 홍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협력기관 지정 및”을 “협력기관의 지정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약물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을 “약물중독 관리 등 정신건강 증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자살실태조사”를 “자살 실태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구청장이 자살예방을 위하여”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를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1.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제6조제1항제2호 중 “상시현장출동”을 “상시 현장 출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전문 인력”을 “전문인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을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으로 한다.

제7조제5호 중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생명존중문화 조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포함한”을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추천한 소속”을 “추천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송파구”를 “서울특별시 송파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경력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필요하다고”를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 정책의 자문 등에

적합하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되, 두 차례만”을 “하며, 2회에 한하여”로,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때에는 부위원장,당연직위원”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으로, “당연직위원이”를 “당연직 위원이”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행하는데”를 “수행하는 데”로, “때”를 “경우”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자살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자살 실태조사 및 연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살실태”를 “자살 실태”로, “자살통계 및 자살위험자 대상”을 “자살 통계와 자살위험자를 대상으로 한”으로, “수집하고 분석”을 “수집·분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살통계를”을 “제1항의 통계”로, “지정하여”를 “지정하거나”로, “위탁하거나”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로 한다.

제14조 중 “자살자의 가족”을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으로,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을 “심리적·정신적 영향을 완화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등의 적절한”을 “상담 및 치료 등 필요한”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를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명칭”을 “이 조례에 따른 기관의 명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치”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치”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으로, “업무”를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극복에 관한 업무”를 “회복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연구·조사와”를 “연구·조사 및”으로, “업무”를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정신건강사업”을 “정신건강 관련 사업”으로 한다.

1.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사업

4. 자살 예방 및 자살 시도자와 자살 사망자 유가족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업

제5조제1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업무, 위탁 기간, 위탁 조건, 관리 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로, “대하여”를 “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기간”을 “위탁 기간”으로, “재위탁 할”을 “재위탁할”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공개모집”을 “공개 모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전문인력 기구 장비”를 “전문인력, 조직, 장비,”로, “기술수준”을 “기술 수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성과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무 처리 능력 및 사업 실적 등

④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제1항 중 “위탁·운영할 때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 관리, 사무의 처리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적합하게”를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작성·비치”를 “작성하여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를 “보조금, 기부금 및 이용료”로,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을 “운영지침에서 정한 회계관리 기준”으로 한다.

1. 조직 및 인사 운영

2. 보수 체계
3. 재산 및 물품의 관리
4. 안전 관리
5. 사무 처리 절차 및 기준
6. 지도 및 감독
7. 운영 평가

제8조제1항 중 “주민의 정신건강관리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로,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을 “운용 자산은 제4조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위탁 할”을 “재위탁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주의의무”를 “주의 의무”로, “추가 설치할 때”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로 한다.

-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구청장과의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 ④ 수탁자는 위탁 계약과 관계없이 소속 직원의 신분을 보장하여 정신건강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8조의 규정을 위반”을 “제8조를 위반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조사 및”을 “조사나”로,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않는”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을 “경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업의 운영과 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매”를

“때”로, “공인회계사”를 “사업 운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총괄 내용을 공인회계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은 위탁계약 체결 시 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을 “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으로, “때에는 관계규정”을 “경우,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경우에”를 “경우,”로, “그 운영”을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운영”을 “위탁 운영”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이용제한)”을 “(이용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용질서”를 “이용 질서”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업무 관련자, 관계분야의 전문가 및”을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관련자, 관계분야 전문가 또는”으로, “자 중”을 “사람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되고”를 “되고,”로, “선출하며,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해 소관업무 부서장이 간사가 된다”를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없을 때”를 “없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위해 별도로 자문위원회를”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별도로”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소관 업무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제15조의 제목 “(위원회 임기·기능 등)”을 “(위원회의 임기·기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두 차례만”을 “2회에 한하여”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사업추진”을 “사업추진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퇴”를 “사임”으로, “있을 때에는”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해 임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중 “이용자의”를 “본인의”로, “때”를 “경우”로,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를 “본인의 귀책 사유”로,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를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로 한다.

제17조 중 “대하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대해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법령”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기사랑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기사랑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